

# 보 건 복 지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의료급여법 시행령」,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및 관련 고시 일부개정 발령 안내

1. 「의료급여법 시행령」,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및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고시 일부개정이 발령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각 시·도에서는 귀 관내 시·군·구(의료급여 보장기관)에, 각 협회에서는 회원 등에게 동 내용을 통지·안내하여 관련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주요 개정내용

가. 「의료급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730호, '16.12.30일 공포, '17.1.1일 시행)

- 의료급여 2종수급자 중 임신부의 병원급 이상 외래 본인부담률 인하(별표1 제2호자목 신설)
- 의료급여 2종수급자 중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는 만3세까지 병원급 이상 외래 본인부담률 인하(별표1제2호차목 신설)

나.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459호, '16.12.30일 공포, '17.1.1일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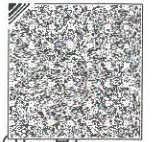
- 다태아 임신부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액 인상(제8조의2)
- 희귀난치 및 중증 질환 급여일수 연장승인 제외 근거 마련(제8조의3제2항)
- 제3차의료급여기관을 의료법상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제17조제1항) \*
- 산소치료에 대한 요양비 지급 범위 확대(제24조제1항제3호 등)
-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지급대상 추가(제24조제1항제5호 등)
- 기침유발기 요양비 신설(안 제24조제1항제6호 등)

\* 다만,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7.4.1일 시행(단, 기존 종합병원은 6.30까지 유예)

다.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고시 제2016-272호, '17.1.1일 시행)

- 제1차의료급여기관 입원범위를 '분만 및 수술을 동반하는 경우'로 확대(제5조)
- 제3차의료급여기관과 상급종합병원간 불일치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던 제3차의료급여기관의 입원료 별도규정 삭제(제4조)\*



-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으로 의료급여2종 수급자 중 임신부와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만 3세까지) 외래 본인부담률이 15%에서 5%로 인하됨에 따라 의료급여비용명세서 작성요령 등 규정

\*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17.4.1일 시행

라.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고시 제2016-245호, '17.1.1일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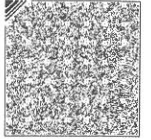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휴대용 산소발생기, 후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의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기침유발기에 대한 요양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 구체화(제3조 등)

마. 「임신·출산 진료비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고시 제2016-246호, '17.1.1일 시행)

- 다태아 임신부의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제2조)

- 붙임 1.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부.  
2.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부.  
3.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고시) 일부개정 1부.  
4.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 1부.  
5.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 1부. 끝.





## 보건복지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희망복지지원과장), 부산광역시장(사회복지과장), 대구광역시장(보건건강과장), 인천광역시장(보건정책과장), 광주광역시장(사회복지과장), 대전광역시장(복지정책과장), 울산광역시장(복지인구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장(복지정책과장), 경기도지사(복지정책과장), 강원도지사(복지정책과장), 충청북도지사(복지정책과장), 충청남도지사(사회복지과장), 전라남도지사(사회복지과장), 전라북도지사(사회복지과장), 경상북도지사(사회복지과장), 경상남도지사(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복지청소년과장), 대한의사협회장, 대한병원협회장, 대한약사회,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장, 홍보기획담당관, 감사담당관, 복지급여조사담당관, 운영지원과장, 인사과장, 정책통계담당관, 정보화담당관, 보건복지콜센터장, 기획조정담당관, 재정운영담당관, 창조행정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 통상협력담당관, 비상안전기획관, 보건의료정책과장, 의료자원정책과장, 의료기관정책과장, 약무정책과장, 질병정책과장, 공공의료과장, 응급의료과장, 생명윤리정책과장, 한의약정책과장, 한의약산업과장, 보험정책과장, 보험급여과장, 보험약제과장, 보험평가과장, 건강정책과장, 건강증진과장, 구강생활건강과장, 정신건강정책과장, 보건산업정책과장,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 보건산업진흥과장, 해외의료총괄과장, 해외의료사업과장, 복지정책과장, 기초생활보장과장, 자립지원과장, 기반조성팀장, 현장지원팀장, 지역복지과장, 급여기준과장, 복지정보과장, 사회서비스정책과장, 사회서비스사업과장, 사회서비스자원과장, 사회서비스일자리과장, 장애인정책과장, 장애인권익지원과장, 장애인자립기반과장, 장애인서비스과장, 인구정책총괄과장, 분석평가과장, 출산정책과장, 아동복지정책과장, 아동권리과장, 노인정책과장, 노인지원과장, 요양보험제도과장, 요양보험운영과장, 보육정책과장, 보육사업기획과장, 보육기반과장, 국민연금정책과장, 국민연금재정과장, 기초연금과장, 사회보장총괄과장, 사회보장조정과장, 사회보장평가과장

주무관 박희정 행정사무관 이범석 ★기초의료보 전결 2016. 12. 30. 장과장 이경은

협조자

시행 기초의료보장과-11493 (2016. 12. 30.) 접수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어진동)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http://www.mohw.go.kr

전화번호 904-4202-3089 팩스번호 044-202-3951 / jslhj@korea.kr / 대국민 공개